KUSF 대학농구 U-리그 대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대회 규정은 한국대학농구연맹이 2025 KUSF 대학농구 U-리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회 및 경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리그는 "2025 KUSF 대학농구 U-리그"라 한다.

제3조 주최, 주관, 재정후원

본 리그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주최하고 한국대학농구연맹(이하 "대학농구연맹"이라 한다)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재정 후원 한다.

제4조 일정

본 리그는 정규리그, 및 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 기간을 나누어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경기규칙

FIBA 경기 규칙을 따르며 특별한 사항은 대학농구연맹이 결정한다.

제6조 공식 사용구

본 리그의 사용구는 대한민국농구협회 공식 지정구 몰텐으로 사용한다.

제7조 경기장소

본 리그는 홈&어웨이로 대학농구연맹이 승인한 경기장에서 개최하여야 하며 체육관 시설물에 대하여 반드시 시설물 점검 및 승인을 필하여야 한다. (제10조 참고) 시설 미비로 인한 홈 경기장 사용이 불가한 경우 어웨이 팀 경기장에서 경기한다. 단, 시설 미비로 인한 어웨이 경기 시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1. 홈경기장 사용 불가에 따른 어웨이 경기 시 상대팀의 동의를 얻어 7일전 대학농구연맹으로 서면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2. 홈팀의 경기일시, 장소의 변경사유가 천재지변, 긴급사항 등 부득이한 변경 신청으로 판단될 경우 1항에 관계없이 대학농구연맹 회장 및 회장단,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홈팀의 변경 신청을 승인한다.
3. 홈 대학에서는 대학농구연맹이 경기규칙에서 정한 농구코트가 설치된 실내경기장을 확보해야 하고, 관중이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최적의 상태에서 홈경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냉난방 시설 미비로 홈경기를 치루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웨이팀의 경기장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하여야하며, 이때 어웨이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제8조 훈련시간

홈팀에서는 어웨이팀 훈련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지도자)간의 조율이 이루어져야한다.

KUBF 한국대학농구연맹

제9조 경기시간

대학농구연맹에서는 어웨이 경기 시 학교 수업 종료 이후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경기 시간을 정한다.

1. 남대부 경기: 오후 4시 (조선대 홈&어웨이 경기 시, 오후2시)
2. 여대부 경기: 오후 2시

제10조 경기장 설비

1. 경기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 스코어보드 전광판
   ② 경기계시기, 24초계시기, 경기용 농구골대
   ③ 통계용 노트북, 프린터, 헤드셋 무선장비
   ④ 경기기록원석, 통계원석
   ⑤ 선수벤치
   ⑥ 의무석
   ⑦ 기자석, 중계방송석
   ⑧ 귀빈석, 관계자석
   ⑨ 대기실 (홈팀. 어웨이팀, 심판, 경기)
2. 경기원은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득점. 비득점	스파터	전산	24초	계시	기록원	기록원

제11조 의무

1. 경기장 내에 의사 또는 응급처치사와 간호사가 각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2. 경기 중 선수 부상에 대비하여 현장에 응급 후송 차량 대기 및 응급조치 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경기장내에 산소 호흡기 및 들것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참가팀, 임원, 지도자, 선수 자격

1. 본 리그의 참가자격은 2025년도 대한민국농구협회 등록 및 대학농구리그 참가 승인을 필한 대학팀에 한 한다.
2. 대회에 참가하는 팀은 남대부 12인 이상, 여대부 8인 이상의 선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징계중인 임원(지도자포함)의 경우, 참가신청은 할 수 있으나 경기 중 벤치 착석 및 선수지도는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4. 징계중인 선수의 경우 징계기간이 해제된 날부터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기출전은 징계해제 이후 참가신청 접수 후부터 할 수 있다.
5. 대회에 참가등록이 완료된 선수가 부상으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병명, 치료기간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주치의 소견서로 불참을 소명하여야 하며, 치료기간 내 대회 출전을 금한다.
6. 대회 기간 중 임원, 선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필히 대한민국농구협회의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대학농구연맹에 참가신청을 변경해야 한다.
7. 대학스포츠 운영규정 제25조 [학점관리와 불이익처분]에 의거하여 2017년도부터 직전 2개 학기 평점 C0 이상 취득한 학생선수에 한하여 협의회가 주최, 주관 또는 승인하는 각종대회에 출전 할 수 있다. (회원대학 및 비회원대학 동일 규정 적용)
8. 창단 대학의 경우 최소 8명의 선수를 보유해야 대회 참가가 가능하다.

9. 외국 국적선수 및 프로(실업) 출신 선수의 참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9-1. 외국 국적선수: 보유 및 그 인원수는 팀의 자유이나 본 대회 출전은 교체를 포함하여 1인만 가능

9-2. 프로(실업) 출신 선수: 보유 및 그 인원수는 팀의 자유이나 본 대회 출전은 교체를 포함하여 1인만 가능. 단, 프로(실업)팀 소속 2년 이내(2시즌)의 선수만 출전가능

10. 이 밖의 사항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농구협회 선수등록 규정을 따른다.

제13조 유니폼

1. 경기 일정표에 먼저 기재된 팀(홈팀)이 어두운색 유니폼, 원정팀은 밝은색을 착용하여야 한다. (양 팀 합의 시 색상변경 가능)
2. 참가선수의 배번은 0번 또는 00번 그리고 1번에서 99번까지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3. 참가선수의 배번은 참가신청 이후 변경이 불가능하며, 어떤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4. 참가신청 등록번호와 동일하지 않을 시에는 경기출전이 불가능하다.
5. FIBA 공식 농구경기 규칙서에서 적용되는 경기 룰은 그대로 적용하되 유니폼 및 기타 착용하는 모든 장비는 대학농구연맹이 정한 룰에 따른다.

◈ 팔 압박용 슬리브, 다리 압박용 스타킹, 손목밴드, 테이핑(팔, 어깨, 다리 등)은 같은 색상 및 단색으로 통일한다.

6. 유니폼 배번 및 이름은 참가신청서와 동일해야하며, 만약 동일하지 않을 시 경기출전을 할 수 없다.
7. 그 외의 사항은 대학농구연맹이 정한 룰을 따른다.

제14조 경기

1. 경기개시 예정시간 40분 전에는 각 팀의 감독 또는 코치가 경기에 출전할 선수의 번호와 이름, 경기개시에 출전 할 5명의 선수를 지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기개시 10분전에 경기에 출전할 5명의 선수를 확인해야 하며 기록지에 서명해야 한다.
3. 선수교체는 교체 할 선수만이 요청할 수 있다. 교체 할 선수가 본부석에 가서 명확하게 교체를 요청하고, 교체용 의자에 앉아야 한다. 이 때 교체할 선수는 즉시 경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4. 타임아웃은 감독과 수석코치만이 요청 할 수 있다. 본부석에 가서 눈 맞춤으로 요청하거나, 손으로 관례적인 신호를 하면서 "타임아웃"이라고 분명하게 요청해야 한다.

* 조건부 타임아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전반전 종료 후 각 팀은 득점 및 선수의 개인파울을 본부석으로 와서 확인하여야 한다.
6. 1, 2쿼터 사이(전반전)와 3, 4쿼터 사이(후반전) 그리고 연장전 시작 전의 휴식시간은 2분, 각 팀의 작전타임은 1분으로 한다.
7. 하프타임의 휴식기간은 15분으로 한다.
8. 5반칙 퇴장선수와 실격되는 선수는 30초 이내로 교체하여야 한다.
9. 부상선수는 15초 이내로 교체해야 한다.
10. 취소된 경기는 대학농구연맹에서 일정을 다시 정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11. 최소 인원이 성립된 상황에서도 경기를 불참하였을 때에는 몰수 패 처리하고 규정상에는 20:0이 표기되며 3팀 이상의 승패가 같을 시에는 승리팀 +10점 패배팀 -10점을 부여하여 골득실 순위를 가린다.

제15조 경기 중지 결정

1. 천재지변, 긴급사항 등 부득이한 경우 경기운영위원, 양 팀 대표자, 심판과 협의를 거쳐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일자를 택하여 재경기를 하여야 한다.

2. 경기 진행 중 경기 속행이 불가능시(골대파손, 전광판 작동불가능 등) 잔여시간, 점수, 출전선수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별도의 일정을 택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제16조 승패 결정

공식 경기에서 양 팀 중 어느 팀 일방의 귀책사유로 경기 개최 불능 또는 중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에 따라 경기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 페어플레이

선수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심판뿐 아니라 임원, 상대팀, 팀 동료 및 관중에 대해서도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제18조 리그 방식

1. 본 리그의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대학농구연맹이 결정한다.
2. 남대부는 2개조를 나누어 홈&어웨이 방식으로 2라운드를 진행하고 상대 조와 1경기씩 진행하여 최종 성적으로 8강 진출팀을 결정한다.
3. 여대부는 7개 팀이 홈&어웨이 방식으로 2라운드를 진행하여 최종 성적으로 4강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결정한다.
4. 순위결정 기준
   ① 두 팀이 승패가 같을 경우 승자승 원칙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서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두 팀 간의 총득점과 총실점을 기준으로 골득실을 따져 골득실이 좋은 팀이 상위 팀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전체 팀간의 총득점과 총실점을 기준으로 골득실을 따져 골득실이 좋은 팀이 상위 팀이 된다.
   ④ 세 팀 이상 승패가 같을 경우 조별리그(경기수 동일)는 세 팀간의 총득점과 총실점을 기준으로 골득실을 따져 골득실이 좋은 팀이 상위 팀이 되며, 정규리그는 전체 팀 간의 총득점과 총실점을 기준으로 골득실이 좋은 팀이 상위 팀이 된다.
   ⑤ 이 밖의 사항은 FIBA 규정을 따른다.

제19조 출전 등에 관한 제재사항

1. 경기 중 퇴장 당한 임원, 지도자, 선수에 대한 징계는 퇴장사유의 경중에 따라 대학농구연맹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2.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행위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학농구연맹 상벌위원회에서 해당 팀, 임원, 지도자, 선수에 대해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
3. 감독, 코치, 선수가 퇴장을 당하거나 출전 정지를 당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경기 개시 전, 도중 또는 후에라도 소속팀의 경기가 진행되는 경기장에 있을 수 없다. 퇴장 당한 감독, 코치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작전 지시를 할 수 없다.
4. 관중석에서 발생되는 욕설 비방에 대해서는 경기운영위원, 심판과 협의하여 퇴장조치 후 경기를 진행하며 추후 재 발생 시 홈경기 금지 또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5. 기타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경기장 질서 위반에 대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대학농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 및 처리된다.
6. 경기 중 부상자 발생 시 반드시 진단명과 치료 기간을 진단서에 표기해야하며 해당 기간 동안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제20조 소청

1. 팀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 팀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점수 기록, 시간 기록 또는 샷 클락 운영에서의 오류로 심판이 FIBA 규정 제44조(실수의 정정)에 따라 정정할 권한이 있었고, 실수를 정정하기로 결정할 당시 확인 가능한 증거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않은 경우
   ② 몰수패 처리를 하거나 경기를 취소, 연기하거나, 경기를 시작하지 않기로 한 결정
   ③ 적용되는 자격에 대한 규칙 위반
2. 소가 인정되기 위해서, 제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① 경기 종료 후 15분 이내에 해당 팀의 주장이 주심에게 그의 팀이 경기 결과에 대해 항의 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리고, 스코어시트에 주장의 서명을 해야 한다.
   ② 경기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제소의 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소에 대해 공탁금 50만원을 대학농구연맹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주심은 경기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대학농구연맹 결정권자에게 원인이 된 상황을 문서로 작성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청이 유효하려면 소청하는 팀의 대표(학교 총장) 직인이 있는 공문을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청 내용은 경기종료 후 제출한 최초의 내용으로만 받아들이며, 추가 및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정권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20조 2항 ⑤의 공문이 접수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하며, 결정권자는 신뢰성 있는 증거를 이용하여 부분 혹은 전체 경기의 재확인 등을 포함하여 제한 없이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권자는 제소의 원인이 되는 오류에 대한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없으며 새로운 결과는 명확하게 문서화 되어야 한다.
4. 결정권자의 결정은 경기 중에 나오는 판정들과 동일하게 여겨지며, 더 이상 검토나 항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자격에 대한 결정은 적용되는 규정을 고려하여 다시 어필할 수 있다.

제21조 시상

1. 조별리그 (남대부 해당)
   - 단체상: 1위 2위 3위
2. 정규리그 (남대부 및 여대부 해당)
   - 단체상: 우승, 2위, 3위
   - 개인상: MVP, 우수상, 미기상, 신인상
   - 기록상: 득점상, 3점슛상, 어시스트상, 리바운드상, 수비상, 기량발전상, 모범선수상
3. 챔피언 결정전 (남대부 및 여대부 해당)
   - 단체상: 우승
   - 개인상: MVP
4. 지도자상
5. 대회기간 중 불미스러운 행동을 야기하거나 경기장 질서를 문란 시킨 지도자, 선수는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2조 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농구연맹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긴급조치 발생 시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만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